

2018년도 주민세(재산분) 신고납부 안내

주민세(재산분)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목포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.

□ 과세대상 : 연면적이 330㎡ 초과하는 사업소

○ 공용면적(주차장, 기계실, 복도 등), 필로티, 무허가가설건축물, 기계장치 및 저장시설 면적 포함

○ 종업원의 보건·후생·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, 구내식당, 직원휴게실, 대피시설 등은 과세대상 연면적에서 제외

□ 납세의무자 : 과세기준일(매년 7월1일)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

□ 세율 : 1㎡당 250원

예시) 사업소 면적이 400㎡일 경우 : 400㎡× 250원=100,000원

□ 신고납부방법

○ 기 간 : 매년 7. 1 ~ 7. 31

※ 기간 경과시 : 신고불성실 가산세 20%,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3/10,000

○ 납부방법

1) 신고서는 반드시 매년 7.1 현재 사업소 연면적으로 작성 후 제출

① 우 편 :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 세정과 과표조사계(우편번호 530-701)

② 팩 스 : 061-270-3580

2) 다음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셔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① 시청방문 납부 : 주민세(재산분) 신고서를 작성 지참 ⇒ 고지서 발급 의뢰

② 인터넷 신고납부(위택스-<http://www.wetax.go.kr>)

◆ 위택스 신고납부 방법 ◆

회원가입(공인인증서 발급)후 회원접속 ⇒ 신고하기(주민세) ⇒ 주민세(재산분) ⇒ 신고서 작성 ⇒ 신고서 출력 ⇒ 납부서 출력 ⇒ 은행납부 또는 인터넷 납부

③ 전화신고 후 납부고지서 우편 수령

☎ 문의사항 : 목포시 세정과 061-270-8207